

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1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·돌봄부담 가중,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바, 노인학대 현장 신속대응 및 효율적 예방 활동을 위해, 「노인복지법」 제 39조5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 중에 있음.
- 나. 그 간 노인학대예방 관련하여 조사 및 판정, 상담, 피해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질적 성장에 기여하였음.
- 다.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재위탁(공모)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개요
- 사업명 :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
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
 - 위탁기간 : 5년 (2022.10.1. ~ 2027.9.30.)
 - 소요예산 : 535,313천원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, 현장조사
-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
-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
- 노인인식 개선교육,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
-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
- 그 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위

○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)
-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경위

- '05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

※ 선정방법 : 공개모집 /수탁자 : (재)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

- '08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- '11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- '14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- '17.10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며,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 필요.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)

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)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둔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
- 제3조(시장등의 책무)

제3조(시장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,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·조사,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,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사업비 등 지원)

제9조(사업비 등 지원)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 편성 (535,313천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성기원 (☎ 2133-7413)